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등을 법률에 구체화〉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4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28.
3. 회 부 일 : 2025.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Ⅲ. 검토의견

1.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실태조사·통계작성 등을 법률에 구체화

개정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3년마다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 피해 현황 및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용품의 제공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3호의2,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④ ~ ⑧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생략)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u> 4.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④ (생략)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u>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u>실태조사 및 공표의</u>-----.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 ---.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 피해 현황 및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 -----<u>다음 각 호에</u>-----<u>지원</u>하여야-----. 1. <u>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u> 2. <u>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u> 3. <u>소방용품의 제공</u>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6. (생략) ② ~ ④ (생략)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화재 발생 시 대응 및 피난 요령 및 훈련의 제공 6.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 -----방법----- -----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예방과 화재안전취약자 등 안전관리-----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4조제1항), 기본계획에는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대국민 교육·홍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제4조제3항)¹⁾.

또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청장에게 매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4조제4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제5조제1항²⁾³⁾)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으며(시행규칙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제2조제5항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제6조제1항5)).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항목>

구 분	조사항목
정책방향 및 여건	○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관련 사항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관련 사항
	○ 화재발생현황에 관한 사항
	○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 관련 사항
소방대상물 관리현황	○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안전 관련 기술 개발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 계절별·시기별·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등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소방청)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

한편,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에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함)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3조제1항6),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24조 제2항7)).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참고로, 소방청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⁸⁾.

8) 소방청은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등 18개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화재안전취약자 현황>

□ 근거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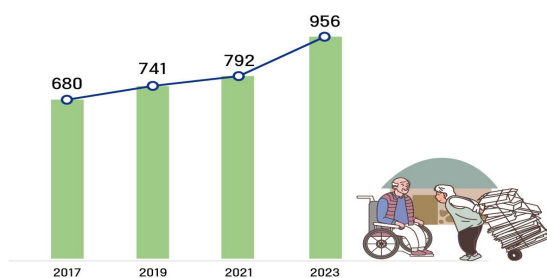
□ 화재안전취약자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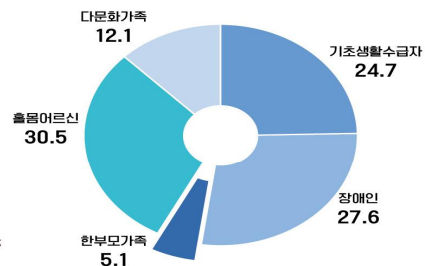
□ 화재안전취약자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

(총괄) '23년 기준 화재안전취약자 가구는 956만 가구로 해마다 증가하여 '21년 792만 가구 대비 164만가구 증가(↑ 20.7%)

(유형) 유형별 현황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30.5%, 장애인 27.6%, 기초생활수급자 24.7%, 다문화가족 12.1%, 한부모가족 5.1%로 분포됨



【연도별 화재안전취약자 현황(만가구)】



【2023년 유형별 화재안전취약자 분포(%)】

(전년대비) '21년 대비 '23년 유형별 증감 현황은 홀몸어르신 43.2%(125만), 기초생활수급자 13.3%(31만), 다문화 5.1%(5.7만), 한부모 4.4%(2.1만) 순 증가
- 장애인만 전년 대비 0.8%(0.2만) 감소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고(안 제4조제3항 제3호의2 신설), 3년마다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2항 신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 피해 현황 및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용품의 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안 제23조제1항 각 호 신설 및 제43조제1항제5호)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개정안의 내용 중 화재안전취약자 관련 지원대책 마련, 실태조사·공표, 통계 작성·관리와 관련한 정책은 현재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를 현행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봄.

구체적으로, 소방청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화기

등 소방용품을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급실적은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또한, 화재안전취약자 현황은 각 소관 부처에서 실시하여 공표하고 있는데⁹⁾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 정보를 보유·운용하고 있는 관계 부처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제5조제2항¹⁰⁾).

9) -화재안전취약자 현황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 공개됨.

- 화재안전취약자 현황, 화재안전취약자별 소관 부처는 [참고] 참조

10) 조문 내용은 각주 2) 참조

<2025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 화재안전취약자 화재취약요인 개선 시행계획(발췌)>

2-6 화재안전취약자 주거공간 화재취약요인 개선

□ 추진배경

- 화재안전취약자(노인, 장애인 등) 증가로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판단 필요
- 화재취약 환경 개선사업 전략적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유인하고, 지원내용을 기초 소방시설에서 확대·다양화 필요

□ 추진방안

- **(협업강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과 협업, 대상 선정
 - 기업·복지법인에 '가족돌봄아동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제안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토지공사(LH) 공동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환경 개선
- **(선정기준)** 취약요인의 시급성·위험성을 고려 지원대상 선정, 우선 순위 판단 프로세스 정립
 - 화재안전취약성 조사 보고서 추가(시·도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작성)
- **(재원확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다각화
 - 민간단체·기업사회의 공헌사업, 고향사랑 기부금·복권 기금 등 활용 화재안전취약자 무상보급 지속
- **(홍보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인명피해 경감 사례중심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집중 홍보
 - 지역 방송매체 또는 유튜브 전문가, 뉴미디어 채널과 협업 추진

□ 추진일정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수립 '25. 상반기
- 전 국민대상 자율설치 문화 확산 홍보·시책 추진 '25. 연중
- 민간 협업 소방안전복지사업 운영 '25. 연중

(자료: 소방청)

다음으로, 개정안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내용 역시 현행법 시행령(령 제24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 역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내용: 개정안과 현행법령의 내용 비교>

개정안 제23조제1항	현행법령	비고 (근거규정)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화재 발생 시 대응 및 피난 요령 및 훈련의 제공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 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 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 시설의 장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 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	「소방 기본법」 제17조 제2항

개정안 제23조제1항	현행법령	비고 (근거규정)
	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6.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행법 시행령 제24조 및 소방청 훈령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매년 계획 수립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이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포괄적 기본계획으로 화재안전취약자에 지원 대책은 구체적 실행 대책의 성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동법 시행령과 훈령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 각 개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하고 있고 소방청은 관련 정보를 보유·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제

5조제2항¹¹⁾), 개정안과 같이 소방청에서 3년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면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11) 제5조제2항의 내용은 각주 2) 참조

참고

화재안전취약자 현황

(자료: 소방청,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3년 현황)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 + 차상위계층 수급자(명)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기초생활			차상위		
소계	남	여	소계	일반	시설	소계	남	여
2,458,608	1,087,444	1,371,164	2,554,627	2,458,608	96,019	187,838	68,131	119,707

※ 보건복지부

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 현황

- 장애 분류·성별 현황(명)

총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2,633,262	1,524,697	1,108,565	970,289	579,285	391,004	1,662,973	945,412	717,561

- 장애 유형별 현황(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2,633,262	1,151,503	247,821	431,869	22,685	229,511	237,562	42,732	103,907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07,636	4,854	10,765	15,609	2,747	17,074		6,987

-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인 현황(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970,289	220,947	45,308	84,783	11,325	229,511	133,969	42,732	102,433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79,987	3,582	10,224	640	1,365	1,582		6,987

- 장애 유형별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현황(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1,662,973	930,556	202,513	347,086	11,360	0	103,593	0	1,474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7,649	1,272	541	14,969	1,382	15,492		5,086

※ 보건복지부

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현황(가구)

합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청소년모자가구	청소년부자가구
194,273	154,164	37,116	1,367	1,497	129

※ 여성가족부

4호.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구분	합계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84세	85세 이상
합계	2,138,107	644,547	469,016	391,978	357,144	275,422
남자	663,187	275,745	162,054	103,057	72,161	50,170
여자	1,474,920	368,802	306,962	288,921	284,983	225,252

※ 보건복지부

5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다문화 가구 현황

- 유형별 다문화 가구원 현황(명)

계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1,191,768	730,263	233,098	179,525	48,882

※ 여성가족부